

1. 일반 원칙

소재지정보에 대한 얼티밋 파이팅 챔피언십("UFC") 정책("UFC 소재지정보 정책" 또는 "소재지정보 정책")은 UFC 반도핑 정책("UFC ADP")의 관련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UFC ADP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시키는 모든 선수¹는 이 소재지정보 정책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UFC 검사대상자등록명단

UFC 검사대상자등록명단("UFC RTP")은 UFC ADP("본 정책의 범위 및 적용"이라는 제목 하에)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USADA로부터 검사를 받는 선수들로 구성된다. UFC RTP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들도 포함될 수 있다: (1) 은퇴에서 복귀하고 UFC ADP 제5.7조에 따라 UFC RTP에 다시 등록되어야 하는 선수, 또는 (2) 반도핑 정책 위반으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고 경기기간 외 검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소재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USADA가 결정하는 특정 선수.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선수는 USADA로부터 UFC RTP에서 삭제되었다는 서면 통지를 받을 때까지 UFC RTP에 유지된다. 이 소재지정보 정책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선수는 UFC RTP의 일원으로 간주된다.

3. 소재지정보 의무

- a. 소재지정보 의무의 일부로 UFC RTP의 **모든** 선수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i. UFC RTP 등록이 허가될 때와 그 후 매년 USADA 온라인 교육 모듈이나 USADA가 제공 또는 승인한 대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 ii. UFC RTP 등록이 허가될 때와 그 후 분기별로 UFC 소재지정보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작성하고 적시에 제출한다.
 - iii. 이전에 제공한 소재지정보 제출에서 정보가 불완전 또는 부정확하거나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소재지정보 제출을 업데이트하거나 계획 변경을 제출하여 변경된 정보를 USADA에 알려야 한다.
 - iv. 선수의 소재지정보 제출 시 선수가 지정한 전체 기간 동안 선수의 소재지정보 제출에 명시된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위치에서 매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¹ 대문자로 시작하는 기울임꼴 용어는 UFC ADP의 용어 정의 섹션에 정의된 의미를 갖는다.

4. 소재지정보 제출

UFC ADP 및 이 소재지정보 정책에 따라 UFC RTP에 등록된 선수가 제공해야 하는 최신 소재지정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a. 반도핑 문제와 관련된 서신과 통지를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우편 주소
- b. 반도핑 문제와 관련된 서신과 통지를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이메일 주소
- c. 선수의 기본 전화번호
- d. 해당되는 경우, 선수가 지명하고 선수를 대신하여 서신을 수령할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의 이름 및 상세한 연락처 정보
- e. 시료 채취 과정을 실시할 때 준수해야 할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상세 정보
- f. 소재지정보 및 기타 반도핑 정보를 *체육위원회* 및 기타 *반도핑기구("ADO")*와 공유하는 것에 대한 선수의 동의 확인
- g. 해당 분기 동안 선수가 출전 예정인 시합이 치러지는 각 장소의 이름 및 주소와 해당 장소에서 선수가 경기를 치를 날짜를 포함한 선수의 분기별 *시합* 일정
- h. 해당 분기 동안 매일 선수가 체류할 장소의 전체 주소(예: 집, 임시 숙소, 호텔 등)
- i. 분기 동안 매일 선수가 훈련, 업무 또는 기타 정기적인 활동을 수행할 각 장소의 이름과 주소. 이러한 정기적인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시간대도 포함한다.²

5.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

UFC RTP에 등록된 선수가 필요한 소재지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또는 완전하게 제공하지 않거나 소재지정보 제출 시 제공된 정보가 부정확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이 소재지정보 정책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이 될 수 있다. UFC ADP에 따라 12개월의 연속적인 기간 내에 세 번의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이 발생하면 UFC ADP 제2.4조에 따라 반도핑 정책 위반("ADPV")이 된다.

² 선수는 도핑검사관이 위치를 찾고, 해당 위치에 접근하고, 해당 위치에서 선수를 찾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로키산 국립공원에서 달리기 연습"과 같이 제출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또한, 소재지정보 요구 사항을 악의적으로 준수하지 않으면 *시료* 채취 회피에 관한 UFC ADP 제2.3조 또는 *도핑관리과정*의 특정 부분에 대한 조작 또는 조작 *시도*에 관한 UFC ADP 제2.5조에 따라 반도핑 정책 위반(ADPV)이 발생할 수 있다.

USADA는 UFC ADP 제2.4조에 의거하여 ADPV를 선언할 목적으로 *규약가맹기구 ADO*에 의해 선언된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을 병합할 수 있다. 또한, USADA는 *체육위원회*에 의해 선언된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선수가 12개월의 기간 동안 USADA로부터 두 차례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 경고를 받고 *가맹기구 ADO* 또는 *체육위원회*로부터 한 차례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 경고를 받는 경우, 해당 선수는 반도핑 정책 위반(ADPV)을 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첫 번째 위반에 대하여 6개월에서 2년 사이의 *자격정지* 제재(추정)를 받을 수 있다.

6. 결과 관리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 또는 반도핑 정책 위반(ADPV)이 선수의 소재지정보 및/또는 소재지정보 책임과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검토하거나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 문제를 회부할 때 USADA는 아래에 명시된 기준을 적용한다.

a.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

- i. 소재지정보를 제출할 때 선수는 USADA 또는 USADA의 피지명인이 분기 중 불시에 검사를 위해 해당 선수를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USADA는 UFC ADP의 목적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이 정보에 의존하며 소재지정보 제출 시 명시한 특정 시간 및 장소에 선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므로 UFC ADP와 이 소재지정보 정책에 따라 UFC RTP에 등록된 선수가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 1) 지정된 마감 시한까지 완전한 소재지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2) 제출된 소재지정보가 변경되거나 더 이상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소재지정보 제출을 업데이트하지 않는 경우
- 3) 소재지정보 제출 또는 업데이트 시 검사를 위해 선수의 소재지를 찾기에 충분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4) 선수가 소재지정보 제출 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선수가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선수는 제6조 (a)(iv)(1)항의 규정에 따라 전술한 불이행 중 하나가 발생할 때마다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을 받을 수 있다.

- ii. *USADA*가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을 의심하는 경우, *USADA*는 선수가 UFC RTP에 포함되어 있고, 선수가 자신이 UFC RTP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소재지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책임에 대해 통지를 받았는지, 그리고 도핑검사관이 적절하고 유효한 시도를 했는지 확인한다.
- iii. 다음으로 *USADA*는 선수가 제4조 (a) ~ (i)항에 명시된 해당 요구 사항을 위반했는지 확인한다.
- iv. 선수는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 발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명백한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에 대한 최초 통지를 받게 된다. 최초 통지서에서는 소재지정보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또는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제출된 이유에 대하여 최초 통지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USADA*에 소명을 제공하도록 선수에게 요구한다. 이 통지서의 사본이 *UFC*에게도 전달된다.
 - 1) 선수는 이 최초 통지가 선수에게 제공되기 전에 발생한 후속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2) 선수가 통지를 받은 후에는 이전의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과 관계된 동일한 유형의 행위와 관련이 있는 불응을 포함하여 후속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 v. *USADA* 직원이 선수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을 선언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 1) *USADA*가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을 선언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의 예에는 가족 응급상황, 선수의 유효한 제출 시도가 실패하거나 소재지정보 정책 불이행에 대해 선수 본인의 과실이 없는 기타 상황이 포함된다.
- vi.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선수 답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USADA*의 최종 결정 통지서가 선수에게 발송된다. 이 통지서는 *UFC*에게도 제공된다.³
- vii. 12개월의 연속적인 기간 내에 반도핑 정책 위반(ADPV)이 발생했다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세 번째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이 공표되면, 선수는 세 번째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 공표 후 14일 이내에 독립적인 행정심사위원회에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을 선언한 *USADA*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³ *USADA*의 최종 결정서 사본이 선수에게 발송될 때 동시에 *UFC*로도 발송된다. 이 서신은 또한 *UFC*가 접근할 수 있는 외부 보안 웹 사이트에 업로드된다.

- viii. 행정심사위원회는 *USADA*의 이사회가 지명하고 *USADA*의 CEO가 선정한 3명의 심사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은 제기된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 사안에 대한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어야 한다.
- ix. *USADA*의 결정에 대한 심사는 서면 제출에만 근거하며 청문회로 간주되지 않는다.
- x. 행정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선수가 반도핑 정책 위반(ADPV)을 범했다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선수에 의해 개시된 추후 청문회에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 xi. 행정심사위원회의 모든 결정과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제기된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 또는 기타 반도핑 정책 위반(ADPV)이 문제가 되는 후속 절차에서 당사자가 인용할 수 있다.
- xii. 심사는 선수의 요청 후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최종 결정은 위원회의 결정 후 7일 이내에 선수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 통지서는 *UFC*에게도 제공된다.
- xiii. *USADA*는 항상 제6조 (a)(iv)항, (vi)항, (vii)항 및 (xii)항에 규정된 일정을 준수하고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로 일정을 벗어나도 위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USADA*의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 선언은 무효화되거나 달리 금지되지 않는다.

b. 청문회

선수는 12개월의 기간 동안 3회의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 소재지정보 제출 시 허위 정보 제공, 시료 채취 회피, 조작 또는 기타 소재지정보 정책 위반으로 인해 징계를 받기 전에 *UFC ADP*의 제8조에 따라 완전한 증거 청문절차를 요청할 기회를 갖는다.

7. 발효일

이 *UFC* 소재지정보 정책(버전 1)의 발효일은 2015년 7월 1일이다. 본 소재지정보 정책은 2015년 7월 1일 이전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8. 수정

이 *UFC* 소재지정보 정책은 *USADA*가 수시로 수정할 수 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수정은 상기 7절에 명시된 정확한 발효일(버전 포함)과 함께 *UFC* 반도핑 웹 사이트 (UFC.USADA.org)에 게시된 후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각 선수는 *UFC*의 반도핑 웹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본 정책과 기타 반도핑 관련 정책의 최신 버전을 검토할 책임이 있다.